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

2. 찬 성 자 : 김민성 의원 외 6인

### 3.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중첩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며, 조례의 간소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함.

### 4. 주요내용

- 실태조사 조항의 간소화(안 제5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 경과조치(부칙 안 제3조)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6.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재정비하여 조례를 통합·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 ○ 검토 결과,

- 고독사 문제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고립 가구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일원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통합으로 인해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련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보건소·경찰서·우체국·통신사 간의 연계 체계 구축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